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5 | 2024.05.13 (2024.05.07~05.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07~05.1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월 3일에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인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인 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로운 가치를 창조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 ②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 신기술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시간과 거리 제약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③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선제 대응** ④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화 디지털 혁신 분야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사도 개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시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는 사회·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안)】

<법사위>는 5/17(금)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6
-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마련(금융위원회)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5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8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9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1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07~05.12) [바로가기](#)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4. 한국거래소
-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확정 - 총 98개 과제, 5,197억원 투입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국립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민간 응용프로그램 연계 등	2024-05-09
---------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 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함

* 위원장(제1차관), 내부위원(기조실장, 국장), 외부위원(민 학 전문가) 20여 명

문체부는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의 연도별 실행계획임

지난해에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를 양성(연 3만 9천 명)하고, 전통문화, 뉴스, 영화 등 문화자원 개방(4천7백만 건) 확대, 디지털 기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내 문화해설 로봇 보급(13곳, 25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23년 12월) 등 신산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함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

- 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 확대
-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 적극 지원
-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

②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 신기술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시간과 거리 제약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 추진

③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선제 대응

-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 강화
-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 구축
-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 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음

④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화 디지털 혁신 분야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사도 개최

-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 개최

< 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 뉴콘텐츠아카데미 150명
- 게임인재원 120명
- 예술산업아카데미 13천명
- 관광미래인재교육 900명



디지털 융복합 지원

- 예술x기술 교육 아트코리아랩
-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자원 개방

- 국가문헌 디지털화 (86천책)
- 국악교육콘텐츠 개발
-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 한국어 말뭉치 7종 구축



빅데이터 개방

- 문화공공데이터 API 20종 개방
- 문화센터국가승인통계확대
- 문화빅데이터 제공기관 등 확대



문화기술연구 (R&D)

-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 기술 17억
- 인공지능기반안전환경 23억
-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진 149억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서비스 혁신 연구 37.2억
- SW 저작권 생태계 조성 3.8억
- XR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유통 11.5억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선제적 서비스

- 문화정책 수혜 및 공모 포털
- 디지털관광 주민증 지역 확대
- 체육인 복지지원시스템
-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 플랫폼



디지털 향유관

- 판소리5바탕 디지털화, 공연제작
- 로봇 등 첨단기술 융합공연 제작
- 공공부문 공연 영상화 100건 제작



제약없는 디지털환경

- 공공도서관 디지털문해력 교육
- 장애인 전자책 뷰어 제작 지원
- 전시 등 수어해설 영상제작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적극행정 안전관리

- 2차 AI-저작권제도개선 워킹그룹
- 사이버 위협 대응 시나리오 확대
- 사이버 위협 처리 자동화를 향상



업무 생산성 제고

-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추진



디지털혁신 거버넌스

- 디지털 혁신 협의체 운영
- 디지털혁신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방향>

비전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

목표

문화 디지털혁신 역량 수준 도약 실현

디지털 문화향유 경험
75.5% → 85%, (기초예술분야) 5% → 8%

직원 디지털 혁신 역량 수준
50점 → 70점

3대 추진 전략

9개 중점 과제

추진 전략
·
중점 과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 1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산업 육성
- 2 창작·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자원 개방
- 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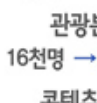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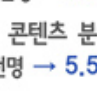
- 4 디지털 문화향유 플랫폼 다변화
- 5 문화시설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 6 소통·이동 제약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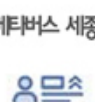
- 7 디지털 적극행정과 안전 문화 조성
- 8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 9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구축

<「문화 디지털혁신」 3대 전략별 주요 성과>

전략 1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디지털 융복합 인재 양성	창작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방	문화기술 연구개발(R&D)
2.1만명 → 3.9만명  문화예술분야 1천명 → 1.7천명  관광분야 16천명 → 32천명  콘텐츠 분야 4천명 → 5.5천명	문화자원 47백만 건 개방    한국어 말뭉치 25종 빅카인즈AI 뉴스 88만 건 *누적 62종 14.7천 면	1,336억 → 1,001억  콘텐츠 770억 저작권 181억 전통 8억 관광 12억 체육 29억 15개 분야 → 13개 분야

전략 2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디지털 문화향유 플랫폼 다변화	문화시설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제한없는 디지털 문화환경
 78개 국 75,869명 이용  메타버스 세종학당  관광데이터 22종 → 24종 월 방문 관광데이터랩 2.2만명 → 4.3만명	 문화해설 로봇  가상현실 스포츠실 문화해설 158% 증 전국 초교 10% 보급 문화공간 25대 운영 전국 초교&시설 로봇해설 35만 회 98개 소 보급 (1일 사람당 9배 다) *누적 654개 소	박물관 스마트 전시관  (청각) 수어안내 (시각) 점자 키패드 (휠체어)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외국인) 다국어 *박물관 4개관 (서울, 경주, 광주, 부여)

전략 3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디지털 적극행정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디지털혁신 거버넌스 구축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23.2~9월, 총 9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마련('23.12)	 월 32시간 → 1시간 외국 관광객 부가세 환급 출국조회 자동화  건당 20분 → 1분 내외부 업무망 간 대규모 문서 자동배포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혁신 역량 22회 3,656명 51.4점 *전년대비 1.6점 ↑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할 계획임.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되는 것으로 ATS 출범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시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ATS 운영방안(案) >

[기본방향]

편의 증진	1. ATS출범을 통한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투자자 보호	2. KRX + ATS 통합 시장관리	
3. ATS에 적합하도록 자본시장 제도 추가 정비		

ATS
운영
방안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 (1) 거래시간 확대 : 하루 12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 (2) 새로운 호가 도입 :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 (3) 기타 서비스 개선 : 대량·바스켓매매 활용도 확대, 수수료 인하, 주문전송·체결속도 개선

2. KRX + ATS 통합 시장관리

- (1) 최선집행의무 : 가이드라인 마련(총금액 및 체결가능성 우선), 증권사 주문 자동집행 전산시스템(SOR) 구축
- (2) 공매도 관리 : ATS Pre마켓·After마켓 공매도 금지 등
- (3) 시장관리·감시·청산·결제 : ATS도 KRX와 동일 수준 운영

3. 자본시장 제도 정비

- (1) ATS 거래대상 : 상장ETF·ETN 거래 허용(추가 인가취득 필요)
- (2) 제도 정비 : 공개매수, 전문인력 요건 등 법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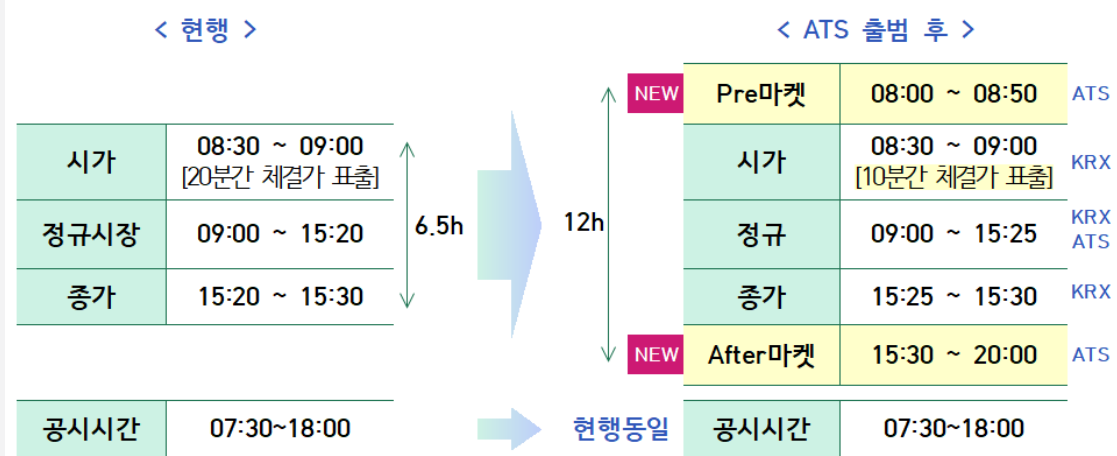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ATS 출범에 따라, 증시 투자자들은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08시50분의 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함.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임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됨.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임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함.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25분~15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임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지는데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추가되고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임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통합 시장관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됨

주요 내용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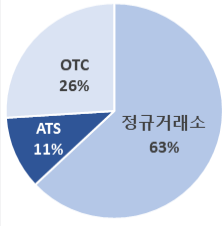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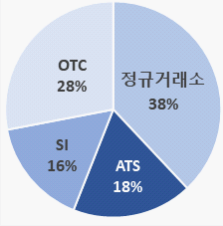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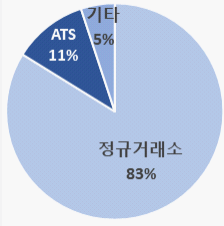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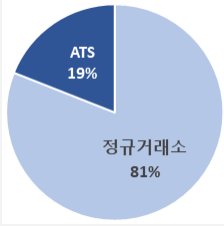
- 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
 - 우리나라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음
 -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임
- ②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
 -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됨
 -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함
- ③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적용**
 -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pm 30\%$ 이며, After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pm 30\%$ 임
 -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하고, Pre·After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임

[자본시장 제도 추가정비]

ATS 도입 취지에 맞추어 자본시장 제도로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우선, 법규를 개정하여 투자자의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임

또한,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임

※주요국은 현재 정규거래소 외 1개 이상의 ATS를 운영 중이며, ATS의 시장점유율(거래금액 기준)은 11~19% 수준

미국	EU	일본	호주
정규거래소 24개 ATS 65개	정규거래소 127개 ATS 142개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5-10 시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수산물 등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배추 및 포도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 및 5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건조한 김 및 조미김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배추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코코아두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제71조, 별표 10~13 신설)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07 시행
-------	--	---------------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

이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본사의 소재지 및 생산품목의 연구·개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및 설치 변경 승인 신청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10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 제87조의3 제1호 신설, 별표 1 제2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등)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10 시행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고,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집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8조제3항~10항, 제92조제1항, 제92조제2항 신설)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7. ~06.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안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 ‘연간’, ‘전년도’, ‘직전 3개월간’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 (안 제49조의2제1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을 정의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설비·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안 제49조의2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mailto:saibichimhaedaeung@kita.go.kr) (전화: 044-202-6463, 팩스: 044-202-60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9. ~06.18.
-----------	----------------	------------------------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 (안 제77조제4항)

- 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전화: 044-202-4958, 팩스: 044-202-6045\)](tel:044-202-4958)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7.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 (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전화: 044-205-4293, 팩스: 044-205-8910\)](tel:044-205-4293)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7.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동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세부 이행절차 등 마련 (안 제36조의2 신설)

- 승강기를 공동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승강기산업 진흥법」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단체가 공동설계한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규정

② 타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5조)

-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인가 등의 사항이 관련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tel:044-205-4293) (전화: 044-205-4293, 팩스: 044-205-891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9.
~06.18.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 수행(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의4 신설)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044-201-2221) (전화: 044-201-2221, 팩스: 044-868-396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7.
~06.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 (안 제3조의2 신설)
-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신설)
- ③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10조의2 신설)
- ④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2조)
- ⑤ 특별법에서 에너지특화기업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제15조 삭제)
- 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함 (안 제23조 신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044-203-5156) (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5152)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역수요·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 (안 제23조제2항)
 -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
-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 (안 별표6의4)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tel:044-201-3635) (전화: 044-201-3635,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 (안 제55조제2항)
 -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총중량) 범위 안에서 총중량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허용
- ②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별지 제33호의4 서식 신설 및 별지 제33호의5 서식 신설)
 - 일시적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 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부착물은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
 -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
- ③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를 준용 (안 제106조의3)
 -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http://www.motw.go.kr) (전화: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5.10.
~06.19.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 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추가 (안 제6조제2항)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②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3)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tel:02-2110-1552)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5-07 발의

현행법은 앱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07 발의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5/17(금) 10: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13(월) 13:30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5/14(화) 10:00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김형동 의원실, (사)한국ILO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4(화) 10:00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양이원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6(목) 10:00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윤창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5/14(화)	「이달의 입법민원」 (2024. 4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5/13(월)	「THE 현안」 제10호(2024-10호) 발간 -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회도서관	
	5/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4호(2024-6호) 발간 -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5/14(화)	「금주의 서평」 제678호(2024-19호) 발간 - 도서명 :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 저자 : 마우로 기옌		
	5/17(금)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 조사목록 (제21대 국회)」 발간		
	5/14(화)	「NABO Focus」 제71호(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5/16(목)	국회미래연구원 브로슈어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5/07(화) 14:00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유상범 의원실, 강원연구원	의원회관 5간담회실
	05/08(수) 10:00	검찰개혁 토론회	황운하·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05/09(목) 15:00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05/10(금) 09:30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05/10(금) 14:00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	김상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05/09(목)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3호) 발간	국회사무처	
	05/08(수)	「World&Law」 제2024-9호 발간 - 양육비 이행 강화, 시급한 과제는?	국회도서관	
	05/08(수)	「금주의 서평」 제677호(2024-18호) 발간 - 도서명 : 타이틀 나인 - 저자 : 세리 보셔트		
	05/09(목)	「현안, 외국에선?」 제81호(2024-9호) 발간 -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05/10(금)	「예산춘추」 통권 제74호(2024년도 두 번째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05/09(목)	「이슈와논점」 제2233호 발간 -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국회입법조사처	
	05/09(목)	「NARS 브리프」 제41호 발간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05/10(금)	「이슈와논점」 제2234호 발간 -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05/10(금)	「NARS 현안분석」 제319호 발간 -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 여성의원 충원패턴의 변화와 지속		
	05/07(화)	「Futures Brief」 24-04호 발간 -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07~05.1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7(화)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4. 한국거래소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5/9(목)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5/9(목)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